

【 상세보기3 】 고급자격증의 범위

고급자격증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◇ 세무사법 제3조에 의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◇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의한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자◇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자◇ 법무사법 제4조에 의한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◇ 변호사법 제4조에 의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◇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◇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◇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